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19재다128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
원고(재심원고) A

피고(재심피고)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
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9. 9. 10.자 2019다251278 판결

판 결 선 고 2020. 3. 27.

주 문

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.

재심청구이유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.

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

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,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(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).

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박정화
-----	-----	-----

주 심	대법관	권순일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이기택
--	-----	-----

	대법관	김선수
--	-----	-----